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122
- 발 의 자 : 오중석 의원 외 28명
- 발 의 일 : 2021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중단 경우를 규정함(안 제 4조).
- 다. 서울특별시장이 재정을 지원한 경우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 등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의 명예 선양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는 관련법령(「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제5조)하여 구성된 단체(비영리 사단법인)로써 현충원 참배, 통일전망대 방문 및 서울 관내 각종학교 방문 효인성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로 구성되는 법정단체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서울특별시재향경우회 구성 현황

- 대표자 : 안**(서울시경우회장, 前 강남경찰서장)
- 회원수 : 11,664명(임원 33명)
- 예산 : 43,200천원/년(중앙회 보조금)
- 단체연혁 : 서울시지부 창립('82.9.),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14.12.)
- 조직규모 : 사무처 직원 4명(서울회장, 사무처장, 총무국장, 사무직원), 지역회 31개(경찰서별 1지회), 이사회 33명
- 주요사업 : 현충원 참배, 통일전망대 및 DMZ 방문, 경우의 날 기념 행사, 서울 관내 각 유·초·중·고등학교 방문 효인성 교육

- 동 제정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시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 목적인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2021.02월 기준, 인천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49개 기초 단체도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

〈 재향경우회 관련 광역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조문구성	지원사업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준용)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 및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전라남도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보조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준용)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 및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다만, 유사단체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의 경우 광역단위의 조례 제정 사례가 없고, 서울시 공무원 퇴직단체인 「서울특별시시우회」 에도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바,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에 보조금 지원을 명문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과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근거하여 일반 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향경우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12.20)되어 자치경찰제가 추진되고 있는 바, 자치경찰제의 조직 및 운영과 예산 등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재정지원, 지원중단, 감독 등 총 7개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 등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를 정의
제3조(재정지원)	- 재난의 예방·복구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지원 중단)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경우회에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제5조(감독)	- 재정지원에 따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준용)	- 재정지원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제7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1) 정의 규정(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산하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로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정하고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다만,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0면)에 따르면,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어 정의를 한 후 그 용어를 다시 약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는 입법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전문위원회실 수정의견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재정지원(안 제3조)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가 재난의 예방·복구,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호국정신의 함양, 희생·공헌 회원에 대한 기념·추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예방·복구에 관한 사항
2.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항
4. 희생·공헌 회원에 대한 기념·추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 조문은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가 재난의 예방·복구,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경찰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민들에게 봉사·환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의 주요사업이 현충원 참배, 통일전망대 및 DMZ 방문, '경우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현행 주요 사업과 조례에서 규정한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여부와 일반 봉사단체 활동과 중첩되는 측면은 없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지원중단(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제4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 조문은 재향경우회의 사업 목적을 위하고 불법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4) 감독(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재향경우회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5조(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 조문은 재향경우회의 재정지원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내실있는 관리 감독을 위한 제반 조치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최근 퇴직공무원 일부 모임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본래의 목적과 설립취지, 사업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퇴직공무원 친목 모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 퇴직공무원 단체의 긍정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준용(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준용)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동 조문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절차 및 관리에 관한 제반규정으로써 동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6)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과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다만,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일부 퇴직공무원 단체들의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시민봉사를 위한 사업 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현황 : 총 51건(광역 2, 기초 49)

연번	구분	법령명
1	광역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	광역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3	기초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	기초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5	기초	강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6	기초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7	기초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8	기초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9	기초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0	기초	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1	기초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2	기초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3	기초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4	기초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5	기초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6	기초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7	기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18	기초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19	기초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	기초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21	기초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2	기초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3	기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4	기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5	기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연번	구분	법령명
26	기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27	기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8	기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9	기초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0	기초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1	기초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32	기초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3	기초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34	기초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5	기초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6	기초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37	기초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8	기초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39	기초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0	기초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41	기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2	기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43	기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44	기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5	기초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46	기초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47	기초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8	기초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9	기초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50	기초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51	기초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